

변경대비표

- 1. 대상약관: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
- 2. 시행일 : 2025 년 1 월 1 일
- 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- 4. 변경 대비표

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<p>제 1 조~제 2 조 &lt;생략&gt;</p> <p><b>제 3 조(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가입)</b>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(가입일 현재 만 19 세 이상 만 34 세 이하인 사람)으로서 제 1 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여야 한다. 다만,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(6 년을 한도로 한다)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 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.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입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 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.</p> <p>가.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,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)</p> <p>나.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)</p> <p>다. 소득 기준연도는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<u>1~7 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한다. 단,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한다.</u></p>	<p>제 1 조~제 2 조 &lt;생략&gt;</p> <p><b>제 3 조(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가입)</b>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(가입일 현재 만 19 세 이상 만 34 세 이하인 사람)으로서 제 1 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여야 한다. 다만,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(6 년을 한도로 한다)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 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.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입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 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.</p> <p>가.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,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)</p> <p>나.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)</p> <p>다. 소득 기준연도는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 <u>가입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(이하 “총급여액등”이라 한다)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</u></p>	<p>조특법§91 의 24 의 1 -소득요건 판단기준 개선</p>

<p>라. 거주자가 「소득세법」제 12 조제 3 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는 비과세소득만 있는자로 보지 않는다.</p> <p>②~ ㉔ &lt;생략&gt;</p> <p>제 4 조~제 5 조 &lt;생략&gt;</p>	<p><u>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</u> 소득을 적용한다.</p> <p>라. 거주자가 「소득세법」제 12 조제 3 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는 비과세소득만 있는자로 보지 않는다.</p> <p>②~ ㉔ &lt;생략&gt;</p> <p>제 4 조~제 5 조 &lt;생략&gt;</p>	
<p>제 6 조(가입기간 및 저축기간)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은 신규 매입체결일 기준으로 <u>2024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제 7 조~제 8 조 &lt;생략&gt;</p>	<p>제 6 조(가입기간 및 저축기간)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은 신규 매입체결일 기준으로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</p> <p>② &lt;좌동&gt;</p> <p>제 7 조~제 8 조 &lt;좌동&gt;</p>	<p>조특법§91 의 20 -적용기한 연장</p>
<p>제 9 조(세제혜택 제한)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<u>5년</u>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,이자,배당,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부터 제 8 조 1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.</p> <p>제 10 조~제 15 조&lt;생략&gt;</p>	<p>제 9 조(세제혜택 제한)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<u>3년</u>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,이자,배당,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 8 조 1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.</p> <p>제 10 조~제 15 조&lt;좌동&gt;</p>	<p>조특법§91 의 20 의 4 항 -세제혜택 제한요건 완화</p>
<p>&lt;부칙&gt; 1. 이 약관은 2023년 03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 2.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&lt;부칙&gt; 1~2&lt;좌동&gt;</p> <p><u>3.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